"존중과 신뢰, 참여와 협력으로 함께하는 북일교육"

북 일 고 등 학 교

http://www.bugil.hs.kr

북일고등학교 제 22 - 38 호	
담당부서	행 정 실
담 당 자	지 영 순
연 락 처	041-520-8607

FAX (041) 551-7116, (우) 31115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69

가 정 통 신 문

(관 인 생 략)

2022학년도 보훈대상자 자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 안내

우리 학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보호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학년도 보훈대상가정의 방과후학교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고자 지원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가정에서는 신청하여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훈대상가정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금액	지원기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이 가능한 *보훈대상자(유족) 자녀

※아래의 [붙임1]을 참고하여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과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 2022. 3. 28.(월) ~ 2022. 3. 31.(목) ※연중 신청 가능하나,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신청장소	행정실 (☎ 041-520-8607, fax 041-551-7116)
신청서류	- 신청서 - 보훈대상자 자녀 증빙서류(보훈대상자 유족 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신청 조건이 확인 가능한 구비(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팩스로 보내시면, 꼭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28.

북 일 고 등 학 교 장

붙임 1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보훈 대상

보훈대상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보훈 대상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약칭: 독립유공자법) 제15조(교육지원) 제2항 제2조: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http://www.law.go.kr/법령/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항 제1조: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제2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항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부칙<제11041호,2011.9.15> 제19조로 보호: 지원대상자 1. 지원순직군경 / 2. 지원공상군경 / 3. 지원순직공무원 / 4. 지원공상공무원 http://www.law.go.kr/법령/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보훈보상자법)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항 제1조: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제25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항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http://www.law.go.kr/법령/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약칭: 5·18유공자법)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항 제1조: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제12조(교육지원 대상자 등) 제1항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http://www.law.go.kr/법령/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고엽제법) 제7조(교육지원) 제1항 제1조: 수당지급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제7조(교육지원) 제1항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자녀) 또는 유족 중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http://www.law.go.kr/법령/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특수임무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약칭: 특수임무유공자법) 제11조(교육지원 대상자등) 제1항 제1조: 특수임무부상자 또는 특수임무공로자 제11조(교육지원대상자 등) 제1항 제3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http://www.law.go.kr/법령/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위의 법령을 근거로 학교 등(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